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집행내역 제출〉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415호)
-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16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5415호)	1
II .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6116호)	2
III . 검토의견	4
1.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집행내역 제출 (장혜영의원안 제54조의2 신설, 박용진의원안 제44조의2 신설) ...	4
[참고]	21

I.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541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혜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5.

다. 회 부 일 : 2023. 11.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신설).

Ⅱ.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611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진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3. 12. 28.

다. 회 부 일 : 2023. 12.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

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집행내역 제출

(장혜영의원안 제54조의2 신설, 박용진의원안 제44조의2 신설)

현 행	장혜영의원안	박용진의원안
<신 설>	○ 특수활동비 등의 관리(§54¹)의2) - 각 중앙관서의 장은 <u>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집행지침</u>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의 <u>집행지침</u>을 심의하기 위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 이 경우 <u>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제2항)</u>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u>특활비등 집행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매년 특활비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u>소관 상임위 요구가 있는 경우</u> 제1항의 <u>집행지침</u>, 제3항의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u>포함한 특활비등의 집행내역을</u> <u>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제4항)</u>	○ 특수활동비의 관리 등(§44²)의2)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u>통보받은 지침</u>을 참고해 <u>특활비에 대한 세부집행지침</u>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의 <u>세부집행지침</u>을 심의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 이 경우 <u>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제2항)</u>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u>특활비 집행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u>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u>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활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함(제3항)</u> - 각 중앙관서의 장은 <u>매년 제1항의 세부집행지침</u>, 제3항의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u>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제4항)</u>

현 행	장혜영의원안	박용진의원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u>집행지침</u>, 제3항의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5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장혜영의원안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2/3 이상이 되는 특활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활비 및 특경비(이하 ‘특활비등’)의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며,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안은 특활비에 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2/3 이상이 되는 특활비심의위원

- 1)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를 두며, 특활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포함된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3)에 대하여 비공개한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장혜영의원안	박용진의원안
적용비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작성대상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집행결과보고서 포함사항	대통령령 위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
집행결과보고서 작성기한	미규정(매년 작성)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보고·제출	소관 상임위 요구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	매년 국회 보고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법」 에 따른 비공개 정보 관련	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 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 §9①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 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 §9①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9①4.에 해당해 비공개된 정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 경과시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 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행정부 내부통제체계 및 편성 규모

현행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⁴⁾는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 4)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
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
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⁵⁾ 및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⁶⁾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두 지침에서는 ‘특활비(230목)’ 및 ‘특경비(250-03목)’를 규정하고 있음⁷⁾.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정의되어 있음⁸⁾.

특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활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집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특활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연 1회 이상)으

5)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7) [참고 1] 및 [참고 2] 참조.

8)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안보비(270목)’도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 2024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4.6% 증액된 8,921억원이 편성됨.

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활비 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⁹⁾.

특경비와 관련하여서는, 특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 말까지 통보하고,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¹⁰⁾.

결국, 현행 특활비 및 특경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내부통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특활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된 1,22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경비는 전년 대비 0.5% 증액된 9,059억 2,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특활비 및 특경비가 편성됨.

[2024년도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2024예산	기 관	2024예산
대통령비서실	8,251	법무부	14,783
경호처	7,606	공수처	111
국회	980	국세청	2,712
감사원	1,519	관세청	1,211
국무조정실	652	경찰청	73,745
과기부	466	해경청	8,399
외교부	521	합 계 (14개 기관)	122,836
통일부	1,88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9)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활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0) [참고 2] 참조

[2024년도 중앙관서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2024예산	기 관	2024예산
대통령비서실	1,580	공수처	441
경호처	2,515	인권위	336
국회	18,536	교육위	7
대법원	20,053	방통위	81
헌법재판소	794	공정위	1,194
선관위	1,157	금융위	208
민평통	22	권익위	582
감사원	4,418	원안위	76
국조실	477	개보위	53
기재부	1,729	국세청	50,767
교육부	58	관세청	13,669
과기부	378	조달청	1,070
외교부	16	통계청	3,712
통일부	18	재외동포청	7
법무부	57,559	병무청	67
국방부	6,256	방사청	173
행안부	716	경찰청	642,527
보훈부	19	소방청	2,574
문체부	92	문화재청	24
농림부	1,521	농진청	26
산업부	72	산림청	372
복지부	49	특허청	239
환경부	190	질병청	17
고용부	9,652	기상청	19
여가부	65	행복청	10
국토부	193	새만금청	14
해수부	270	해경청	58,482
중기부	26	518진	78
인사처	71	진화위	200
법제처	10	합 계 (60개 기관)	905,926
식약처	38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의견

현행 법률에서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특활비 및 특경비는 다른 예산과목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집행상 필요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등¹¹⁾에서 일부 명시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과목구조가 하위과목에 치우쳐 편성되고 있고, 법령의 근거 없이 세세항이나 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구분을 창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¹²⁾.

이에 더해 검찰 및 여타 행정기관의 경우, 특활비 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예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두 개정안은 법률에 특활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

1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금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금(概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12)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pp. 214-5.

회에 제출·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활비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특활비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 비목과 달리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내용확인서(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사후적으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기에,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활비 및 특경비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소위 ‘행정 과목(세항·목)’ 이므로 그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 제21조제4항은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성질

에 따른 목의 구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을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특활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부전문가가 집행지침을 심의하고,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국회에 제출·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기한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배포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말 것”¹³⁾,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음¹⁴⁾”을 새로이 명시하기도 함.

이에 더해 「국가정보원법」¹⁵⁾ 및 「국회법」¹⁶⁾은 국가안전보장을

13) 2023년 배포한 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14) 2023년 배포한 지침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15)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산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고,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예산 내역 등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심의하고 있음.

만일 개정안대로 규정될 경우 정보예산의 규모도 함께 드러나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통상의 수사·정보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 개정안은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장혜영의원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용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진의원안의 경우 국회에 보고하는 집행결과보고서에 특활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¹⁷⁾하고 있는데, 상기한 내용을 고려하면 두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및 조문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우선,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을 규정하면서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제4호의 입법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¹⁸⁾ 진행 중인 재판

17) 참고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423호)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18)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¹⁹⁾으로, 대법원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판시²⁰⁾한 바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박용진의원안 제5항 후단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감안한 규정으로, 수사 또는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기밀성을 아울러 도모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중 비공개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장혜영의원안은 제54조(보조금의 관리)의 가지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박용진의원안은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의 가지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의 구분 및 목의

1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2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은 각각 제44조 및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²¹⁾).

참고로 특활비와 관련하여, 제18대·제19대 국회에서 특활비의 법적 근거 및 집행내역의 소관 상임위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²²⁾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²³⁾되어 법안소위를 거쳤으나, 법률에 내용을 신설하기 전에 특활비 개선 노력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으나,

특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1) 참고로 제18대·제19대·제20대 국회에 기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이 제21조의 가지조문인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음.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222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5518호.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8357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033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44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469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4991호.

특활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될 경우 특활비 운영의 본질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특활비의 기밀성을 인정²⁴⁾하여 일시·금액 등 일부정보만 공개하도록 하고 사안별로 공개범위도 다르게 결정²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사건수사 등 집행자료에는 수사기법, 정보원 정보 등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종료 이후에도 공개가 불가하고, 국정원 소관 정보예산 및 비밀활동 역시 사건종료 후에도 공개가 불가하므로 법안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정원은 특활비 등 예산상의 비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서 행정부 재량에 따라 폐쇄될 수 있으므로, 비목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 외에도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감사원, 국세청에서도 동지의 의견을 제시함.

특경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특경비의 89%가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개인 활동비로서 법안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24) 대판 2022누33776, 2023. 4. 1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중 : 특활비는 그 자체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활동 내용과 활동주체, 수사규모 등 정보가 노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5) 특활비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별 공개범위

구분	액수	일자	수령인	지급사유
국회('18.6)	○	○	○	X
대검('23.4)	○	○	X	X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장혜영의원안	박용진의원안
<신 설>	제5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2.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이 조에서 “특수활동비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특수활동비등 집행	제44조의2(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현 행	장혜영의원안	박용진의원안
	<u>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④ <u>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등의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u> ④ <u>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⑤ <u>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 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특활비’ 및 ‘특경비’ 관련 내용

12.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대상

-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 준수여부 사전점검 실시(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집행결과보고서·집행내용확인서 작성 등)

- ☐ '23년에 기 계상된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 특수활동비 중 수사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요구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 적용대상

-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반영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 ☐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 활동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 개인활동비는 인원, 단가, 기간을 곱하여 산출
 - 개인활동비 = 인원 × 단가 × 기간(월)
 - 부서활동비는 단순 총액계상이 아닌 특정업무 및 조직(국·과 등)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
- ☐ 업무추진비 또는 축·조의금(기타운영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 새로운 항목의 특정업무경비 신설 및 단가의 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참고 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특활비’ 및 ‘특경비’ 관련 내용

3. 특수활동비(230목)

3-1. 적용범위

-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집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는 주기적(연 1회이상)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별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17.11.16.개정, '18.1.1.시행)」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집행실태 점검결과 환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별첨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 2017. 11. 16.
결 산 - 2404 】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
3.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직무수행경비(250목)

5-3.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단,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예시: 일용직, 사무보조원, 직제상 특정업무수행 부서 소속임에도 특정업무 미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이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